

<붙임 1> 2022년 의료인 면허신고 안내

1. 신고대상

- 1) 2018.12.31.이전 면허 취득자 중 면허신고 하지 않은 자
- 2) 2012년~2018년 면허신고 후 재신고 하지 않은 자
- 3) 2019년 면허 취득자(2019년 보수교육 면제신청 필수)
- 4) 2019년 면허신고 완료한 자

2. 신고기간: 2022.1.1. ~ 12.31.

3. 신고방법: KNA 면허신고센터(<http://lic.kna.or.kr>)에서 대상자 여부 조회 및 면허신고 가능

- 1) 간호사는 누구나 협회회원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가능
- 2) 전년도까지 보수교육 이수 내역 필요
- 3)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면허신고 시(3년 마다) 필수교육(2시간) 이수 내역 필요

| 필수교육 주제 | |
|---|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감염관리 - 아동·노인 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- 마취 사고 등 응급상황 대비교육 (기본소생술, 전문심혈관 소생술 등) - 모성보호제도 관련 법령 - 성희롱·성폭력·폭력 - 안전진료 가이드라인 - 장애인 건강권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양성평등 및 인권교육 (미혼모·부 인식개선 포함) - 의료 법령 및 주요 위반 사례 - 의료윤리 - 의약품 부작용 사례 - 의료분쟁 사례 - 자살예방(게이트 키퍼 양성 교육) - 환자혈액관리* 2022년 추가 주제 |
| <p>※ 필수교육(2시간 이상)이 포함되어 있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: 보수교육 시간 및 필수교육 이수 모두 인정</p> <p>※ 필수교육이 포함되지 않은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: KNA에듀센터 온·오프라인 필수교육(무료)을 별도로 이수해야 필수교육 이수로 인정</p> | |

4. 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 대상자

- 1) 보수교육 면제대상(관련근거 법령: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6항)

| 구분 | 증빙서류 |
|---|---------------|
| 간호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(해당면허 외의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, 해당 면허에 대한 심화 과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수교육 면제 불인정) | 당해연도 성적증명서 |
| 당해 연도에 면허증을 신규로 발급받은 자(재교부자 제외) | 면허증 사본, 면허증명서 |
|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| |
| - 외국에서 해당 면허관련 대학(원) 교육을 받은 경우 | 당해연도 성적증명서 |
| - 해당연도 출산자(출산 후 퇴사한 자도 포함) | 출생증명서, 등본 등 |
| - 군대에 사병(사회대체복무도 포함)으로 의무복자 중인 자 (해당연도 6개월 이상 복무시 면제 대상임) | 병적증명서 등 |

※ 2018년부터 면제 대상이 출산자와 의무복무자로 확대(2017년 이전은 면제대상이 아님)

2) 보수교육 유예대상(관련근거 법령: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7항)

| 구분 | 증빙서류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해당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| |
| - 휴직자 | 휴직기간 명시된 재직증명서 등 |
| - 퇴직자, 미취업자 |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조회조건: 전체) |
| - 교수 및 연구원 | 재직증명서(직위/직책 명시) 연구원은 업무에 따라 직무기술서 필요 |
| - 일반 · 행정기관/의료기관 종사자 | 재직증명서와 직무기술서 |
| - 노조전임자 | 인사발령서(전임기간 표시) |
| - 해외체류자 |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|
|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| |
| - 군 복무중인 자(2017년 이전) | 병적증명서 등 |
| - 입원 또는 질병휴직자 | 진단서(기간표시) |

※ 보수교육 유예란?

보수교육 면제와 달리 교육을 다음 해로 미룬다는 의미로, 유예대상자는 간호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유예한 다음 년도에 일정 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

- 보수교육이 1년 유예된 경우: 12시간 이상
- 보수교육이 2년 유예된 경우: 16시간 이상
- 보수교육이 3년 이상 유예된 경우: 20시간 이상

5, 문의: 1588-6282(면허신고, 보수교육 면제·유예신청, 보수교육 이수시간: 내선 1번)